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노식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3049 발 의 년 월 일 :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:노식래 의원(1명) 찬 성 자 :김기대, 김재형, 김정태,

> 김제리, 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 오현정, 이광호, 이병도, 이성배, 이영실, 장상기, 전석기, 최 선, 홍성룡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대학가 청년들은 거주기간이 짧고 학업과 취업활동에 바빠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이 있음.
- 현행 조례 또한 청년의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을 통해 청년 의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장기거주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 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청년의 창업 뿐 아니라 학 업, 취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자립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청년의 창업활동에서 학업, 취업, 창업활동으로, 주택 공급을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로, 자립기반 강화를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로 각각 확대함(안 제1조).
- 나. 청년을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이자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자립·정착 기반 마련을 기본이념으로 함(안 제2조).

다. 기본원칙 청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체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도록 함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주거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 중 "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"을 "청년의 학업, 취업, 창업활동"으로 하고, "주택공급"을 "주택공급 및 주거복지"로 하며, "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"를 "자립기반 강화,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"로 한다.
- 제2조 중 "소비주체로"를 "소비주체이자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" 로 하고, "자립"을 "자립·정착"으로 한다.

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청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체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할 것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<u>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
제2조(기본이념) 이 조례는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의 <u>소비</u> 주체로 정의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이 <u>자립</u>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	제2조(기본이념)

제4조(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서울 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워칙에 따라 첫 년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1. ~ 4. (현행과 같음)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 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 도록 할 것
- 2. 준주택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 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 을 촉진할 것
- 3.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 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 상시킬 것
- 4.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

5. 〈신 설〉

제	4조((청년	[주거	정책	의 7	기본의	원칙)	
								 •

5. 청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체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 여를 지원할 것